



학 교 법 인 송 강 학 원

2022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임원	8인	2인

1. 일 시 : 2022년 5월 25일(수) 17:00~18:05 (회의소집 통보일: 2022년 5월 16일)

2. 장 소 :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6인) : 오장원, 서평렬, 김희남, 박대홍, 이선재, 조광명
- 감사(1인) : 최규철

○ 결석 임원

- 이사(2인) : 김화진, 이치우
- 감사(1인) : 국승열

4. 안 건

- 가.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나.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다. 교원보수규정 및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의결

5. 회의내용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2022학년도 제3차 이사회를 2022. 5. 25. 17:00에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실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 진행하다.

사회자는 재적이사 8명중 6명이 참석하여 정관 제28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2022학년도 제3차 이사회의 개최를 선언하다.

간 서 명	오장원	서평렬	김희남	박대홍	이선재
	조광명	최규철			

6. 안전심의

가. 의안 제1호 :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의장은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별첨과 같이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사회자는 2022회계연도 법인일반업무회계의 본 예산액은 2,447,664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8,087천원이 증액된 2,455,751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내역을 설명하다. 그리고 수익사업회계의 본 예산액은 1,402,372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증감 없이 1,402,372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내역을 설명하다.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서평렬 이사는 법인점직직원의 급여를 법인회계에서 업무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체육관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는 체육관의 대관행사가 활성화 되어 법인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하다.

박대홍 이사는 서평렬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의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의장은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별첨 : 의안 제1호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나. 의안 제2호 :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의장은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별첨과 같이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사회자는 설치·경영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의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의 본 예산액은 24,804,278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464,000천원이 증액된 25,268,278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내역을 설명하다. 그리고 비등록금회계의 본 예산액은 18,573,437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1,368,800천원이 증액된 19,942,237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내역을 또한 설명하다.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간 서 명	오장현	서평렬	김희남	박대홍	이선재
	조광명	최규원			

김희남 이사는 미사용전기이월자금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증액이 주요 내용인 것 같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따라 학생의 복지를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종 지표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한다.

조광명 이사는 김희남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의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의장은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별첨 : 의안 제2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다. 의안 제3호 : 교원보수규정 및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의결

의장은 교원보수규정 및 직원보수규정 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사회자는 설치·경영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수당을 교원보수규정 및 직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기 위해 2022년도 제5차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보수규정 및 직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제청하였기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함을 설명하다.

박대홍 이사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수당을 보수규정에 명확히 기입하여 향후에라도 수당을 지급하는데 오해가 없어야 하고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예산을 고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하다.

의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의장은 교원보수규정 및 직원보수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별첨 : 의안 제3호 교원보수규정 및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의결

7. 폐회 선언

의장은 2022. 5. 25. 18:05분에 2022학년도 제3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간 서 명	오정현	서평열	김희남	박대홍	이선재
	조광명	최규칠			

2022. 5. 25.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

오 장 원



이 사

서 평 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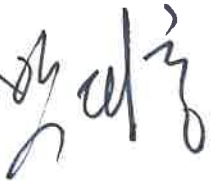
이 사

김 희 남



이 사

박 대 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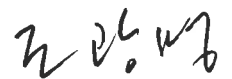
이 사

이 선 재



이 사

조 광 명



감 사

최 규 철





학 교 법 인 송 강 학 원

2022학년도 제3차 이사회 안건

1. 일 시 : 2022년 5월 25일(수) 17시 00분

2. 장 소 :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실

3. 안 건

제 1호 :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제 2호 :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제 3호 : 교원보수규정 및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의결

간 서 명	오장원	사명렬	김희남	김화진	박대홍
	이선재	이치우	조광명	최규철	국승열

『의안 제1호』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의결주문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대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가. 법인일반업무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A)	본 예산액(B)	증 감(A-B)	비 고
세 입	2,455,751	2,447,664	8,087	
세 출	2,455,751	2,447,664	8,087	

나. 수익사업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A)	본 예산액(B)	증 감(A-B)	비 고
세 입	1,402,372	1,402,372	0	
세 출	1,402,372	1,402,372	0	

□ 불임

1.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간 서 명	오장원	서평원	김희남	김화진	박대홍
	이선재	이치우	조광명	최규철	국승철

『의안 제2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의결주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학교법인 송강학원 설치·경영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의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하여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A)	본 예산액(B)	증 감(A-B)	비 고
등록금회계(a)	25,268,278	24,804,278	464,000	
비등록금회계(b)	19,942,237	18,573,437	1,368,800	
내부거래제거(c)	1	1	0	
합계(a+b-c)	45,210,514	43,377,714	1,832,800	

□ 붙임

1.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간 서 명	오장환	서귀열	김희남	김화진	박대훈
	이선재	이치우	조광명	국승열	

『의안 제3호』

교원보수규정 및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의결

□ 의결주문

설치·경영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의 교원보수규정 및 직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설치·경영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에서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수당을 교원보수규정 및 직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자, 이에 2022년도 제5차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교원보수규정 및 직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제청하였기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교원보수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로 포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교원보수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보직수당) ① 교원이 보직에 임명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u>총장이 따로 정한다.</u> ②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상위직 보직수당만을 지급한다. 다만, 겸임된 업무가 특수성을 가질 때에는 총장이 특별히 정하는 방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직수당) ① 교원이 보직에 임명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u>[별표 1]에 의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u>총장이 따로 정한다.</u>	제17조(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u>[별표 1]에 의한다.</u>

간 서 명	오장원	서광철	김희남	김화진	박대홍
	이선재	이치우	조광명	최규철	국승열

현행	개정안
제18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u>예산의 범위안에서</u>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범위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 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지급한다. ③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원은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변동이 생긴 경우도 또한 같다. ④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되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 범위안에서 3개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⑤ 교원이 허위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교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8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u>[별표 2]와 같이</u>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범위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정근수당가산금) <u>예산의 범위안에서</u>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9조(정근수당가산금) <u>[별표 3]의 금액으로</u> 지급한다.
제20조(정액급식비) <u>예산의 범위안에서</u>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0조(정액급식비) <u>[별표 4]의 금액으로</u> 지급한다.
제21조(정근수당) ①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u>공무원수당 등에 관한</u> 규정에 정한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정근수당 지급기준일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로 하되 기준일 현재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계속 지급되는 자 중 지급기준일 이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21조(정근수당) ①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u>[별표 5]의 금액으로</u>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간서명	오장원	서광열	김희남	김희진	박대홍
	이선재	이치우	조광명	최규철	국승열

현행	개정안
제22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u>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② <u>제1항의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교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u> ③ <u>자녀학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원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 명시)를 첨부한 취학자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u> ④ <u>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한 이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u> 제23조(연구보조비) 연구보조비는 <u>예산의 범위안에서</u>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학사지도비) <u>예산의 범위안에서</u>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 제23조(연구보조비) 연구보조비는 [별표 6]의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24조(학사지도비) [별표 7]의 금액으로 지급한다.

간서명	오장원	서평렬	김희남	김화진	박대홍
	이선재	이치우	조광명	최규철	국승열

현행	개정안
제26조(기타수당) 기타 필요에 따라 <u>봉급조정</u> , 정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기타수당) 기타 필요에 따라 <u>연구비, 특별수당, 시간외 수당, 봉급조정수당</u>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 보직/특수업무수당(교원보수규정제16조,제17조)

(단위: 원)

구분	보직수당(제16조)	특수업무수당(제17조)	비고
총장	1,000,000	3,000,000	
처장	300,000	300,000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행정처장
대학원장	200,000	300,000	대학원장
원장, 단장, 부처장	150,000	200,000	산학협력단장, 대학혁신사업단장, 국제교육원장, 교육혁신원장, 교양기초교육원장, MAUM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부처장
학과장, 실장, 관장	100,000	100,000	학부장, 학과장, 홍보비서실장, 도서관장, 송강학숙관장, 체육관장, 행정부서책임교수, 보건진료소장, 센터장, 부단장, 부원장, 주무팀장
부센터장	70,000	80,000	부센터장, 대학원주임교수
팀장	50,000	70,000	

[별표 2] 가족수당(교원보수규정제18조)

- 배우자 40,000원
- 부모 20,000원
- 자녀(첫째 20,000원, 둘째 60,000원, 셋째이후 100,000원)

간 서 명	오장완	서평열	김희남	김화진	박대훈
	이선재	이치우	조광명	최규원	국승철

[별표 3] 정근수당가산금(교원보수규정제19조)

년수	금액(단위: 원)
25년이상	130,000
20년이상 24년이하	110,000
15년이상 19년이하	80,000
10년이상 14년이하	60,000
5년이상 9년이하	50,000
4년이하	20,000

[별표 4] 정액급식비(교원보수규정제20조)

- 130,000원

[별표 5] 정근수당(교원보수규정제21조)

년수	금액(단위: 원)
10년이상	봉급액의 50%
9~10년미만	봉급액의 45%
8~9년미만	봉급액의 40%
7~8년미만	봉급액의 35%
6~7년미만	봉급액의 30%
5~6년미만	봉급액의 25%
4~5년미만	봉급액의 20%
3~4년미만	봉급액의 15%
2~3년미만	봉급액의 10%
1~2년미만	봉급액의 5%
0~1년미만	지급안함

[별표 6] 연구보조비(교원보수규정제23조)

구분	금액(단위: 원)
총장	800,000
교수	600,000
부교수	530,000
조교수	480,000

간 서 명	오장원	서평필	김희남	김화진	박대홍
	이선재	이치우	조광명	최규철	국승철

[별표 7] 학사지도비(교원보수규정 제24조)

구분	금액(단위: 원)
교원	33,000

3.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로 포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 직원보수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직수당) ① 직원이 보직에 임명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u>총장이 따로 정한다.</u> ②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상위직 보직수당만을 지급한다. 다만, 겸임된 업무가 특수성을 가질 때에는 총장이 특별히 정하는 방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직수당) ① 직원이 보직에 임명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u>[별표 1]에 의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u>총장이 따로 정한다.</u>	제14조(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u>[별표 1]에 의한다.</u>
제17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u>예산의 범위안에서</u>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범위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 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지급한다. ③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변동이 생긴 경우도 또한 같다.	제17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u>[별표 2]와 같이</u>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범위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간 서 명	오장원	서평원	김희남	김화진	박대호
	이선재	이치우	조광명	최규철	국승열

현행	개정안
④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되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 범위안에서 3개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⑤ 직원이 허위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8조(정근수당가산금) <u>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u> 지급한다. 제19조(직급보조비) <u>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u> 지급한다. 제20조(정액급식비) <u>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u> 지급한다. 제21조(정근수당) ①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u>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지급구분에 의하여</u>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정근수당 지급기준일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로 하되 기준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계속 지급되는 자 중 지급기준일 이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22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u>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정근수당가산금) <u>[별표 3]의 금액으로</u> 지급한다. 제19조(직급보조비) <u>[별표 4]의 금액으로</u> 지급한다. 제20조(정액급식비) <u>[별표 5]의 금액으로</u> 지급한다. 제21조(정근수당) ①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u>[별표 6]의 금액으로</u>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

간서명	오장원	서평력	김희남	김화진	박대홍
	이선재	이치우	조광명	최규원	국승열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자녀학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 명시)를 첨부한 취학자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한 이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3조(행정업무수당)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행정업무수당) [별표 7]의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24조(학사지도비)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학사지도비) [별표 8]의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26조(기타수당) 기타 필요에 따라 봉급조정, 정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기타수당) 기타 필요에 따라 봉급조정수당, 기타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간 서 명	오장원	서평렬	김희남	김화진	박대홍
	이선재	이치우	조광명	최규철	국승원

[별표 1] 보직/특수업무수당(직원보수규정제13조,제14조)

(단위: 원)

구분	보직수당(제16조)	특수업무수당(제17조)	비고
총장	1,000,000	3,000,000	
처장	300,000	300,000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행정처장
대학원장	200,000	300,000	대학원장
원장, 단장, 부처장	150,000	200,000	산학협력단장, 대학혁신사업단장, 국제교육원장, 교육혁신원장, 교양기초교육원장, MAUM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부처장
학과장, 실장, 관장	100,000	100,000	홍보비서실장, 도서관장, 송강학숙관장, 체육관장, 행정부서책임교수, 보건진료소장, 센터장, 부단장, 부원장, 주무팀장
부센터장	70,000	80,000	부센터장, 대학원주임교수
팀장	50,000	70,000	

[별표 2] 가족수당(직원보수규정제17조)

- 배우자 40,000원
- 부모 20,000원
- 자녀(첫째 20,000원, 둘째 60,000원, 셋째이후 100,000원)

[별표 3] 정근수당가산금(직원보수규정제18조)

년수	금액(단위: 원)
25년이상	130,000
20년이상 24년이하	110,000
15년이상 19년이하	80,000
10년이상 14년이하	60,000
5년이상 9년이하	50,000
4년이하	20,000

간 서 명	오장원	서평명	김희남	김희진	박대홍
	이선재	이치우	조광명	최규진	국승열

[별표 4] 직급보조비(직원보수규정 제19조)

구분	금액(단위: 원)
3급	580,000
4급	400,000
5급	250,000
6급	155,000
7급	140,000
8급	105,000
9급	105,000

[별표 5] 정액급식비(직원보수규정 제20조)

- 130,000원

[별표 6] 정근수당(직원보수규정 제21조)

년수	금액(단위: 원)
10년이상	봉급액의 50%
9~10년미만	봉급액의 45%
8~9년미만	봉급액의 40%
7~8년미만	봉급액의 35%
6~7년미만	봉급액의 30%
5~6년미만	봉급액의 25%
4~5년미만	봉급액의 20%
3~4년미만	봉급액의 15%
2~3년미만	봉급액의 10%
1~2년미만	봉급액의 5%
0~1년미만	지급안함

간 서 명	오장원	서평열	김희남	김화진	박대홍
	이선재	이치우	조광명	최규철	국승철

[별표 7] 행정업무수당(직원보수규정 제23조)

구분	금액(단위: 원)
3급	-
4급	580,000
5급	530,000
6급	400,000
7급	350,000
8급	320,000
9급	300,000

[별표 8] 학사지도비(직원보수규정 제24조)

구분	금액(단위: 원)
직원	33,000

간 서 명	오장원	서평명	김희남	김화진	박대홍
	이선재	이치우	조광명	최규원	국승열